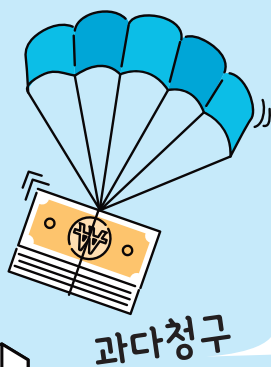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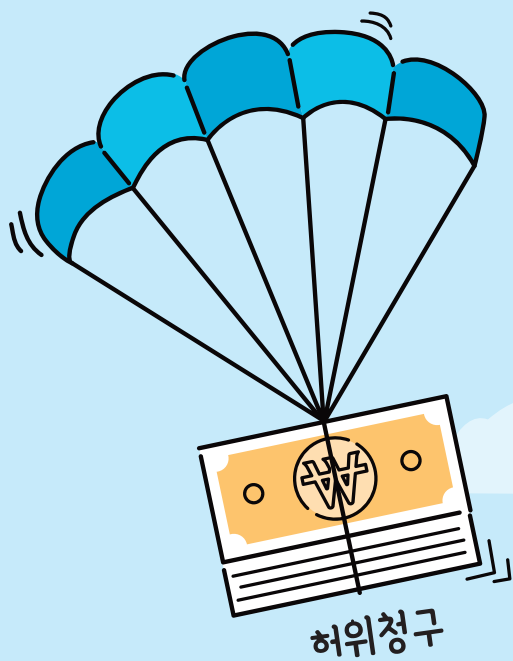


유가보조금 공공재정환수법 바로알기

부정이익의 환수 |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 명단공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핵심내용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부정이익의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신고자 보상·포상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

유가보조금은 대표적인 공공재정지급금입니다!



유가보조금이란?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등과 여객자동차(버스, 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운수업계보조금)과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유류세보조금)을 말하며 대표적인 **공공재정지급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제7항, 「해운법」 제41조제2항)

유류세연동보조금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액 및 2016년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연료보조금

수소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해 수소를 충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어떠한 경우가 부정청구에 해당하나요?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청구의 유형 [법 제2조제6호] (부정수급)



허위청구 [가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나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사용 [다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라목]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대상

03

유가보조금 주요 부정청구 사례는?

사례1

택시에 연료구매카드로 주유를 한 후 영업을 하지 않고 사적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 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편취

공공재정환수법 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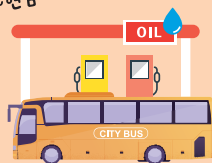
기름 만땅~
여행가야지~

사례2

버스회사와 주유소가 공모하여 주유내역을 허위로 조작해 연료구매카드로 결제 한 후, 버스회사가 결제금액의 90%를 주유소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편취

공공재정환수법 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사례3

화물자동차주와 주유소가 공모하여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차동차 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이 주유한 비용 및 세차·차량용품 비용 등을 해당 유류구매카드로 한꺼번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편취

공공재정환수법 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누구든지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수사기관

검찰·경찰

감독기관

감사원

부정청구
신고



04 어떻게 신고하나요?

소중한 나랏돈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신고방법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FAX

044-200-7972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비밀보장 철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신분보장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신고자와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등의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면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 등과 관련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 등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 지급 신청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

- ① 국민권익위원회
- ②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 ③ 그 감독기관
- ④ 감사원 또는
- ⑤ 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의

**보상금
신청방법
안내**

신고자

**보상금
지급신청**



신청요건

부정이익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부정청구등 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원**

신고자 보상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044-200-7742~7748)

신고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포상금 지급 추천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

지급 대상자
추천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가능

추천요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부정청구등 신고
포상금 최대
2억 원

신고자 보상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044-200-7742~7748)





유가보조금

공공재정환수법 바로알기